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함(안 제16조).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세 진)